

구 분	시설명	시설의 배분	위 치	면적(m ²)			비 고																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															
변경	공원	도시자연공원	광장동 381 일대	5,073,566	증)33,222	5,106,788	용마자연공원편입																
<p>3. 입안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광장동 381번지 일대는 아차산기슭의 용마자연공원과 접하며 한강주변 동남부 서울시민이 항상 바라보는 풍치가 수려하고 입상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○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공원녹지 체계상 환상녹지축의 일부인 수락산-불암산-용마산-아차산으로 이어지는 동부녹지축에 해당되어 ○ 이 지역의 자연경관과 상대계를 보존하고 체계적인 공원으로 가꾸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하고 ○ 이 일대 녹지보존을 열망하는 시민여론에 부응하여 공원으로 결정코자 함. <p>4. 추진경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77.7.9 용마·아차산 일대 공원결정(건고시 제138호) ○ '86.8.1 광장동 산 79-1 일대 수도용지 결정(서고시 제548호) ○ '97.2.13 동 지역일대 자연녹지지역 변경결정(서고시 제1997-40호) <p>5. 참고사항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r> <td>의안 번호</td> <td>48</td> <td>제출년월일: 1998.7.30.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</td> <td>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</td> </tr> </table> <p>1. 안 건 명 :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22번지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</p> <p>2. 입안내용 : 공원결정</p>				의안 번호	48	제출년월일: 1998.7.30.			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														
의안 번호	48	제출년월일: 1998.7.30.																					
		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m ²)			비 고																
				당 초	변 경	증·감																	
변경	공원	근린공원	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22	-	6,456	증)6,456	영등포시립병원 이적지																
<p>3. 입안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22번지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등포시립병원 이적지로서 주변 공구상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공원을 조성한 지역으로, 공원의 효율적 유지·관리를 위하여 공원으로 결정코자 함. <p>4. 추진경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97.11.25 : 공원조성완료 ○ '98.6.4 : 도시계획(안) 공람공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의견없음 <p>5. 참고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계획사항 : 준주거지역, 일부 도시계획 <p>가. 상세계획구역 변경 결정조서</p>		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설(철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 : 지하철5호선 환기구(A=444m²) <p>○ 토지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필지 6,456m²(시유지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r> <td>의안 번호</td> <td>50</td> <td>제출년월일: 1998.7.31.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</td> <td>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</td> </tr> </table> <p>1. 안 건 명 : 중화생활권중심 상세계획 결정</p> <p>2. 입안내용</p>				의안 번호	50	제출년월일: 1998.7.31.			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										
의안 번호	50	제출년월일: 1998.7.31.																					
		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																					
	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위 치</th> <th colspan="3">면적(m²)</th> <th rowspan="2">비 고</th> </tr> <tr> <th>기 정</th> <th>변 경</th> <th>변경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중랑구 중화동 286, 303, 305번지 일대</td> <td>34,000</td> <td>감) 4,000</td> <td>30,000</td> <td>도면 정정없이 단순 면적변경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위 치	면적(m ²)			비 고	기 정	변 경	변경후	중랑구 중화동 286, 303, 305번지 일대	34,000	감) 4,000	30,000	도면 정정없이 단순 면적변경				
위 치	면적(m ²)			비 고																			
	기 정	변 경	변경후																				
중랑구 중화동 286, 303, 305번지 일대	34,000	감) 4,000	30,000	도면 정정없이 단순 면적변경																			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